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

2014. 8.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목 차

| | |
|------------------------------------|----|
| I. 기술료 제도의 개념 | 1 |
| 1. 정 의 | 1 |
| 2. 목 적 | 1 |
| 3. 근 거 | 1 |
| 4. 관련용어 | 1 |
| II. 기술료 제도의 운영 | 3 |
| 1. 운영체계 | 3 |
| 2. 기술료의 징수 | 4 |
| 3. 기술료의 납부 | 5 |
| 4. 기술료의 사용 | 5 |
| 5. 기술료 세부기준 표준화 | 7 |
| 6. 기술료 제도 관련 가이드라인 | 19 |
| III. 해외 기술료 제도 | 35 |
| 1. 주요국의 기술료 제도 현황 | 35 |
| 2. 이스라엘의 기술료 제도 현황 | 36 |
| IV. 기타사항 | 37 |
| 1. 기술료 제도의 변천과정 | 37 |
| 2. 2014년도 주요 관련규정 개정사항 | 40 |
| V. 기술료 제도 관련 Q&A | 48 |
| <붙임1> 부처별 기술료 관련 주요 법규 현황 | 52 |
| <붙임2> 부처별 정부납부 기술료 징수사용기준 비교 | 53 |

기술료 제도의 개요

1. 정 의

-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 또는 국가(전문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규정

2. 목 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여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국익에 기여하고, 연구개발 재투자 및 연구자들의 연구의욕 고취 등을 통해 기술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 연구개발결과물 → 기술이전·사업화
→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 재투자 및 연구원 보상

3. 근 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제22조(기술료의 징수), 제23조(기술료의 사용)

4. 관련용어

| 용어 | 정의 |
|-------|---|
| 정부출연금 | <공동관리규정 제2조 제10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 |
| 전문기관 | <공동관리규정 제2조 제6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

| 용어 | 정의 |
|-----------------|---|
| 주관연구기관 | <p><공동관리규정 제2조 제2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p> |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 <p><공동관리규정 제20조 제1항> ①유형적 결과물(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함</p> <p><공동관리규정 제20조 제2항> ②무형적 결과물(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며,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결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함</p> |
| 기술실시계약 | <p><공동관리규정 제2조 제11항>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p> |
| 기술실시 | <p><공동관리규정 제2조 제7항>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의미</p> |
| 기술료 | <p><공동관리규정 제2조 제8항>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p> |
| 정부납부 기술료 | <p>민간 기술거래에서의 기술료(로열티, Royalty)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출연금의 지원으로 개발한 성과물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을 구분하기 위해서 후자를 구분하여 부르는 용어</p> <p>※ 공동관리규정에서는 이에 대해, ①영리법인 직접실시의 경우 기술료 징수(제22조제1항)와, ②영리법인 제3자실시의 경우 기술료 사용(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음</p> |
| 정부납부 정액기술료 | <p>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한 영리법인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실시 또는 제3자실시 했을 경우, 출연금의 일정비율을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p> |
| 정부납부 경상기술료 | <p>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한 영리법인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실시 했을 경우, 출연금의 일정비율로 납부하는 착수기본료와 매출액 발생 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하는 기술료를 의미</p> |

1. 운영체계

□ 기술료 제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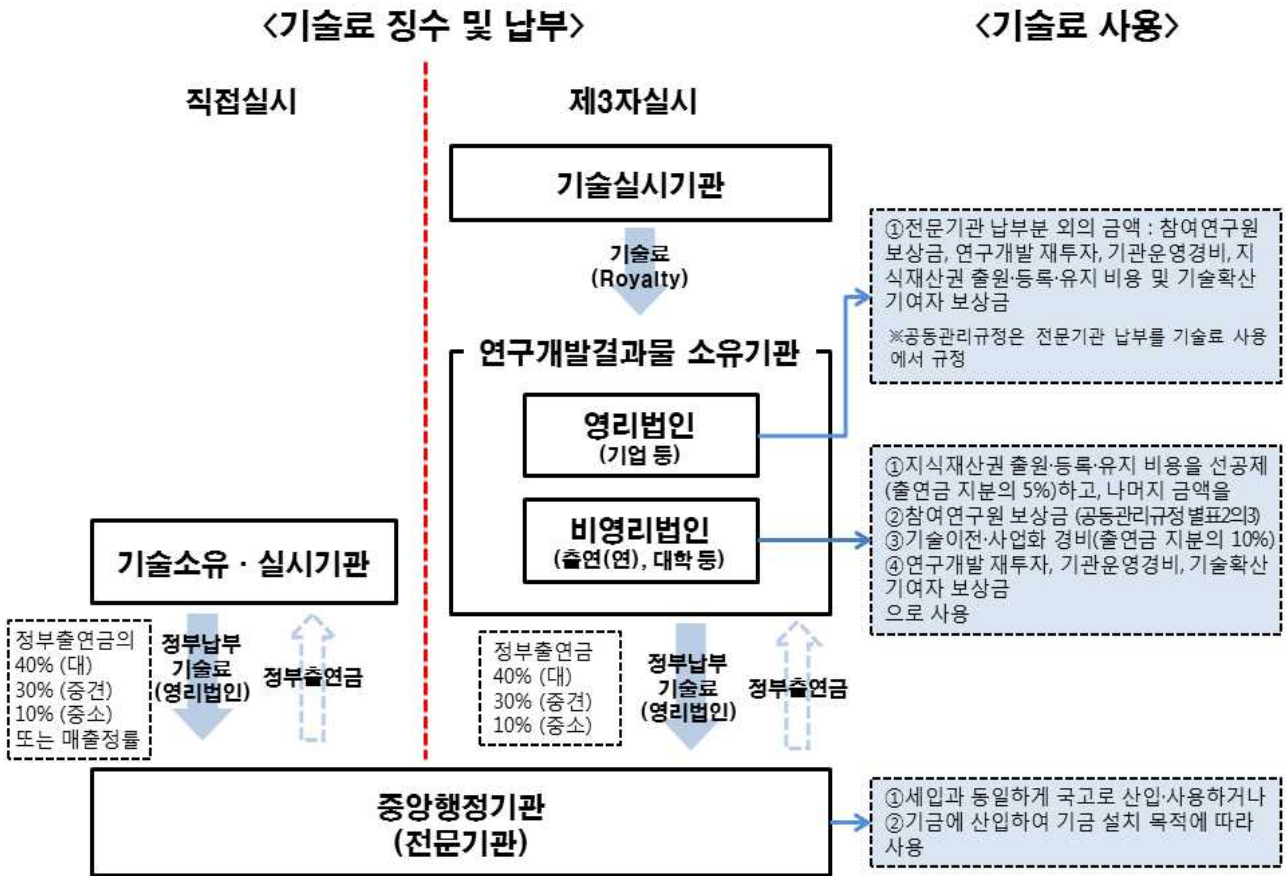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실시의 대가를 징수하는 ①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영리법인)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 또는 제3자실시하여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에 정부출연금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납부하는 ②기술료 납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영리법인이 제3자실시하여 징수한 기술료 중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을 '정부납부 기술료'로 칭하여 민간 기술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기술료(로열티-Royalty)'와 구분

※ 영리법인이 제3자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은 공동관리규정 제23조(기술료의 사용)에 규정된 것으로 엄밀하게 분류할 경우, 기술료가 아니지만 기술료를 재원으로 한 전문기관 납부금액이므로 정부납부 기술료로 통칭

- (i) 중앙행정기관이 영리법인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국고 또는 기금에 산입하여 사용하거나,
- (ii)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이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참여연구원 보상금,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한 경비, 연구개발채투자 및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등에 직접 사용하는 ③기술료 사용으로 구분

<기술료 제도의 운영체계>



2. 기술료의 징수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 연구개발결과물을 제3자실시하는 경우

-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의 규모 및 납부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고 전문기관에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를 제출

※ 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는 “기술료의 납부”에 해당되어 공동관리 규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기술실시 보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정부납부 기술료를 납부

3. 기술료의 납부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영리법인이

- 제3자실시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 영리법인의 규모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40%(대기업), 30%(중견기업), 10%(중소기업)를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토록 하고,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한 경우
 - 정액기술료 방식에 따라 영리법인의 규모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40%(대기업), 30%(중견기업), 10%(중소기업)을 징수하거나,
 - 경상기술료 방식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최초로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5년간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술료를 징수

4. 기술료의 사용

□ 비영리법인은

- 제3자실시를 통해 징수한 기술료 중에서 지식재산경비(출원·등록·유지비 등)로 정부출연금 지분의 5%를 우선 적립·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사용
 - 참여연구원 보상금 : 정부출연금 지분의 50% 이상 ~ 10%*
 - 기술이전·사업화 경비 : 정부출연금 지분의 10% 이상
 - 나머지 금액 : 연구개발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경비(필요시), 기술이전 기여자보상금 등

* <참여연구원의 한 해 누적 보상금 20억 원 초과 시 지급 기준>

| 보상금 누적금액 | 보상금 지급액 |
|-------------------|-----------------------------------|
|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정부 출연금 지분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
|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 정부 출연금 지분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
|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정부 출연금 지분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
| 50억원 초과 |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

□ 영리법인은

- 제3자실시를 통해 징수한 기술료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40%(대기업), 30%(중견기업), 10%(중소기업)를 전문기관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음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
 - 참여연구원 보상금, 연구개발채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경비, 기술이전 기여자보상금

□ 정부(전문기관)는

-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실시 또는 제3자실시하는 영리법인으로부터 징수한 정부납부 기술료를 국고 또는 기금에 산입하여 사용

5. 기술료 세부기준 표준화

1 기술료 세부기준 범부처 표준화(2014.2.3.)

가. 기술료 징수대상 관련

◆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거나 개발한 기술을 다른 기관에 이전하여 기술료를 징수하는 영리법인 (공동관리규정 개정)

□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부처 특성이 반영된 경우는 부처 특성*과 표준화 방안이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

* 산업부, 중기청 : 연구개발 평가결과 ‘성공인 과제’를 대상으로 징수

□ 징수대상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는 표준화 방안을 참조하여 징수 대상 기준을 다른 부처와 유사하게 정비할 필요

나. 기술료 징수금액 관련

◆ 정액기술료 : 정부출연금의 대기업 40%,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10% 징수 (공동관리규정 제22조제1항)

◆ 경상기술료 : 매출액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의 총 금액을 정부출연금 범위 내로 설정 (훈령·지침 개정)

□ 정액기술료는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모든 부처가 적용하는 기업 유형에 따른 징수금액을 적용할 필요

□ 경상기술료는 현재 부처에서 정부출연금 범위 내로 운영되는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제도를 기 도입한 부처(산업부)에서 추진하는 제도개선 내용을 토대로 제도 미 도입 부처는 제도 도입을 추진

○ 산업부, 경상기술료 제도개선(착수기본료·경상기술료율 인하) 마련

○ 미래부, 경상기술료 매출액 검증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다. 기술료 징수기간 관련

- ◆ 정액기술료 :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2년 범위 내 연장 (훈령·지침 개정)
- ◆ 경상기술료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 후 3개월 이내, 경상기술료는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납부
(공동관리규정 개정)

□ 정액기술료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적정기간 3년 희망)와 중소기업청의 징수기간 제도*를 참고하여 적용할 필요

* 중기청 : 3년 동안 균등분할 납부, 필요시 2년 범위 내 연장

□ 착수기본료 납부기한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참조하여 현행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를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 후 3개월 이내’로 조정, 기업의 납부부담을 완화할 필요

라. 기술료 감면기준 관련

- ◆ 일시 및 조기납부의 경우 최대 40%까지 감면하고, 기타 감면 사항은 부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 (훈령·지침 개정)

□ 기업의 기술료 납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시·조기납부의 경우는 다수 부처에서 적용하는 감면 비율인 40%를 동일하게 적용

마. 기술료 납부수단 관련

- ◆ 현금, 유가증권 및 신용카드 등 이상 3가지 종류 모두 가능
(공동관리규정 및 훈령·지침 개정)
- ◆ 유가증권의 범위를 가치평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실한 수단인 약속어음, 공증어음 및 신용보증기금증권으로 명확화
(훈령·지침 개정)

- 기술료 납부수단에 ‘신용카드’도 포함
 - 기업의 기술료 납부 부담을 줄이고, 기술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범부처로 확대할 필요
- 유가증권의 범위를 가치평가가 가능한 수단으로 명확화
 - 주식의 경우 가치평가액 변동이 심하며, 비상장기업 주식의 경우 기업 부도 등의 사유 발생 시 가치소멸에 따른 문제 상존

바. 기술료 납부서식 관련

◆ 기술실시 보고서,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 기술료 사용 실적 보고서, 기술료 감면 신청서 등 4종으로 간소화
(훈령·지침 개정)

- ‘기술실시 보고서’는 내용은 유사하나 부처별로 서로 다른 7종*의 양식을 1개의 양식(별첨1)으로 통합하여 일원화할 필요
 - * ① 기술실시계약 추진계획서(국토부, 해수부) ② 기술사업화계획서(국토부) ③ 기술실시계약보고서(미래부, 농진청, 국토부, 해수부) ④ 기술활용보고서(국토부, 해수부) ⑤ 기술료 납부계획서(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환경부, 농진청, 국토부, 해수부, 농림부) ⑥ 연구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복지부), ⑦ 경상기술료 납부확약서(미래부, 산업부)
-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와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는 부처별로 유사한 명칭*과 서식을 각각 1개의 양식(별첨2, 별첨3)으로 통합하여 일원화할 필요
 - * ‘기술료 징수결과보고서’,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
- ‘기술료 감면 신청서’는 부처별로 내용은 동일하나 서식이 조금씩 다른 부분에 대하여 동일한 서식(별첨4)으로 일원화할 필요
 - 기술료 감면에 대한 조건은 부처별로 상이하나, 감면신청 서식은 차이를 둘 필요성이 적어 일원화할 필요(현 양식이 대체로 유사함)

(별첨1) '기술실시 보고서' 표준화 서식

| 기술실시 보고서 | | | | | | | |
|---|--|--------------------------------------|------------------------------------|-------------------------------------|------------|--------|--|
| (단위 : 원) | | | | | | | |
| 연구개발과제 현황 | 대사업명 | | | | 중사업명 | | |
| | 세부사업명 | | | | 연구과제번호 | | |
| | 연구과제명 | | | | | | |
| |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 참여기업명 | | | |
| | 연구협약일 | 연구기간 | | | | | |
| |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기타 () | 계 | | |
| 기술실시계약 및 성과활용 현황 | 계약(활용)명 | | | | | | |
| | 계약(활용)일 | | | 실시(활용)기간 | | | |
| | 지재권 종류 | | | 실시권 유형 | | | |
| | * 지재권이 특허인 경우 | 명 칭 | | | | | |
| | | 번 호 | | | 일 자 | | |
|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 기관명 | | | | 기관유형 | |
| | | 주 소 | | | | 대 표 자 | |
| | | 사업자번호 | | | | 전화번호 | |
| | | 부서(담당자) | | | | e-mail | |
| | 연구개발 결과물 실시(활용)기관 | 기관명 | | | | 기관유형 | |
| | | 주 소 | | | | 대 표 자 | |
| | | 사업자번호 | | | | 전화번호 | |
| 부서(담당자) | | | | | e-mail | | |
| 기술실시 유형 | 비영리법인 직접실시 <input type="checkbox"/> | 비영리법인 제3자실시 <input type="checkbox"/> | 영리법인 직접실시 <input type="checkbox"/> | 영리법인 제3자실시 <input type="checkbox"/> | | | |
| 기술료 총액 | 원 (감면시 산출근거 제시) | | | | | | |
| 정액기술료 납부계획 | 회차 | 회차 | | 회차 | 회차 | 합계 | |
| | 금액 (일자) | 금액 (일자) | 금액 (일자) | 금액 (일자) | 금액 (일자) | 금액 | |
| | | | | | | | |
|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 착수기본료 | 매출에 따른 기술료 | | | | | |
| | 금액 (일자) | 시작일 | 종료일 | 결산월 | 기술료율 | | |
| | | | | ()월 | 매출액의 ()% | | |
| 기타조건 | | | | | | | |
| 기타 특이사항 | <p>(예시)</p> <p>1. 실시기업은 *** 관련 규정 및 협약서에 의거 상기에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착수기본료와 본 과제를 활용하여 매출 발생 및 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경상기술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경상기술료를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매출이 미발생시에는 매출 미발생 사유서를 포함한 경상기술료 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것을 약속합니다.</p> <p>2. 본 과제에서 발생한 실시계약 체결 또는 본 사업을 활용한 매출이 발생한 후, 기술료 미납, 경상기술료 보고서 미제출, 매출 허위보고 등이 발견될 시에는 **** 요령 제**조 규정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p> | | | | | | |
| <p>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p> <p>붙임 : 기술이전 형태에 따라 제출(기술실시계약서, 연구개발과제협약서 등)</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 | | | | | | |

[양식 해설]

■ 개요

“기술실시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할 것을 전문기관에 보고하거나, 기술실시기관과 체결한 기술실시계약을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 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분야분류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분야분류(6T)
※ IT 정보기술, BT 생명공학기술, NT 나노기술, ET 환경공학기술, ST 우주항공기술, CT 문화콘텐츠기술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 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계약(활용)명 : (기술이전시)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직접실시시)기술사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직접실시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기술이전 형태 : 비영리법인(대학·출연연) 실시, 영리법인 제3자실시, 영리법인 직접실시(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참여기관 포함) 체크
- 기술료 총액 : 기술실시계약서 상의 기술료를 작성
* 정액+경상(최저·최고기술료)+기타조건(마일스톤 등) = 기술료 총액
* 기술료 감면승인을 받은 경우 감면 내용, 감면승인 공문 번호 및 일자 기재
- 정액기술료 : 선급(계약금) 및 정액기술료로 계약서에 절대금액으로 정해진 기술료 기재
- 경상기술료 : 매출액 또는 판매이익 등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계산하여 지불하는 기술료로 계약서에 정해진 징수조건과 징수기간 기재
- 최저기술료 : 경상기술료와 관계없이 경상기술료의 최저한도를 정한 기술료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기재
- 최고기술료 : 경상기술료와 관계없이 경상기술료의 최대한도를 정한 기술료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기재
- 기타 조건 : 정액기술료의 마일스톤 조건 등 절대금액 이외에 기술료 조건에 대하여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별첨2)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 표준화 서식

|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 | | | | | | | | |
|--|--------------------------|---------|-------|------------|--------|--------|-------|---|
| (단위 : 원) | | | | | | | | |
| 연구개발과제 현황 | 대사업명 | | | | 중사업명 | | | |
| | 세부사업명 | | | | 연구과제번호 | | | |
| | 연구과제명 | | | | | | | |
| | 연구기관명 | | | 연구책임자 | | | 참여기업명 | |
| | 연구협약일 | | | 연구기간 | | | | |
| |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 기업부담금 | | 기타 () | | 계 |
| 기술실시계약 및 성과활용 현황 | 계약(활용)명 | | | | | | | |
| | 계약(활용)일 | | | 실시(활용)기간 | | | | |
| | 지재권 종류 | | | 실시권 유형 | | | | |
| | * 지재권이 특허인 경우 | 명 칭 | | | | | | |
| | | 번호 | | | 일자 | | | |
|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 기관명 | | | | 기관유형 | | |
| | | 주소 | | | | 대표자 | | |
| | | 사업자번호 | | | | 전화번호 | | |
| | | 부서(담당자) | | | | e-mail | | |
| | 연구개발 결과물 실시(활용) 기관 | 기관명 | | | | 기관유형 | | |
| 주소 | | | | | 대표자 | | | |
| 사업자번호 | | | | | 전화번호 | | | |
| 부서(담당자) | | | | | e-mail | | | |
| 기술료 징수 및 납부 현황 | 징수 기술료 | | | 전문기관 납부기술료 | | | | |
| | 구 분 | 징수일 | 징수 금액 | 구 분 | 납부일 | 납부금액 | | |
| | 기 징수 | | | | 기 납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소 계 | | |
| | 금회 징수 | | | 금회 납부 | | | | |
| 계 | | | 계 | |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결과를 보고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와 전문기관에 납부한 기술료 결과를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 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 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계약(활용)명 : (기술이전시)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직접실시시)기술사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직접실시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별첨3)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표준화 서식

| <h2 style="margin: 0;">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h2> | | | | | | | |
|---|-----------------------------|------------|----------|---------|--------|--|--|
| (단위 : 원) | | | | | | | |
| 연구개발과제 현황 | 대사업명 | | | | 중사업명 | | |
| | 세부사업명 | | | | 연구과제번호 | | |
| | 연구과제명 | | | | | | |
| | 연구기관명 | | 연구책임자 | | 참여기업명 | | |
| | 연구협약일 | | 연구기간 | | | | |
| |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기타 () | 계 | | |
| 기술실시계약 및 성과활용 현황 | 계약(활용)명 | | | | | | |
| | 계약(활용)일 | | 실시(활용)기간 | | | | |
| | 지재권 종류 | | 실시권 유형 | | | | |
| | * 지재권이 특허인 경우 | 명 칭 번 호 | | 일 자 | | | |
|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 기관명 | | 기관유형 | | | |
| | | 주 소 | | 대 표 자 | | | |
| | | 사업자번호 | | 전화번호 | | | |
| | | 부서(담당자) | | e-mail | | | |
| | 연구개발 결과물 실시(활용) 기관 | 기관명 | | 기관유형 | | | |
| | | 주 소 | | 대 표 자 | | | |
| 사업자번호 | | | 전화번호 | | | | |
| 부서(담당자) | | | e-mail | | | | |
| 징수 기술료 | 구 분 | 징수년도 | 징수금액 | 사용금액 | 잔 액 | | |
| | 지난년도 징수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당해년도 징수 | | | | | | |
| | 계 | | | | | | |
| 당해년도 징수 기술료 사용실적 | 구 분 | | | 사 용 금 액 | | | |
| |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보상금 | | | | | | |
| | - 개발기술 이전 및 사업화 경비 | | | | | | |
| | - 연구개발 재투자 | | | | | | |
| |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 비용 | | | | | | |
| | - 기술확산 기여직원 보상금 | | | | | | |
| | - 기관운영경비 | | | | | | |
| | - 전문기관 납부액 | | | | | | |
| | - 기타() | | | | | | |
| 계 | | | |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연간 사용실적을 다음년도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하며, 당해 년도 사용금액이 없더라도 제출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 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 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계약(활용)명 : (기술이전시)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직접실시시)기술사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직접실시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별첨4) '기술료 감면 신청서' 표준화 양식

| 기술료 감면 신청서 | | | | | | | | | | | |
|---|-----------------------------|---------|--|--|-------|----------|---------------|-------|---|--|--|
| (단위 : 원) | | | | | | | | | | | |
| 연구개발과제 현황 | 대사업명 | | | | | 중사업명 | | | | | |
| | 세부사업명 | | | | | 연구과제번호 | | | | | |
| | 연구과제명 | | | | | | | | | | |
| | 연구기관명 | | | | 연구책임자 | | | 참여기업명 | | | |
| | 연구협약일 | | | | 연구기간 | | | | | | |
| |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 | 기업부담금 | | 기타 () | | 계 | | |
| 기술실시계약 및 성과활용 현황 | 계약(활용)명 | | | | | | | | | | |
| | 계약(활용)일 | | | | | 실시(활용)기간 | | | | | |
| | 지재권 종류 | | | | | 실시권 유형 | | | | | |
| | * 지재권이 특허인 경우 | 명 칭 | | | | | | | | | |
| | | 번호 | | | | | 일 자 | | | | |
|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 기관명 | | | | | 기관유형 | | | | |
| | | 주 소 | | | | | 대 표 자 | | | | |
| | | 사업자번호 | | | | | 전화번호 | | | | |
| | | 부서(담당자) | | | | | e-mail | | | | |
| | 연구개발 결과물 실시(활용) 기관 | 기관명 | | | | | 기관유형 | | | | |
| | | 주 소 | | | | | 대 표 자 | | | | |
| | | 사업자번호 | | | | | 전화번호 | | | | |
| | | 부서(담당자) | | | | | e-mail | | | | |
| | 기술료 감면 | 감면근거 | | | | | | | | | |
| 감면사유 및 내용 | | | | | | | | | | | |
| 감면금액 산출내역 | | | | | | | | | | | |
| <p>○○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조 제○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 | | | | | | | | | | |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 감면 신청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료 감면을 전문기관에 신청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 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연구성과활용명 : 연구성과 중 활용하고자 하는 기술의 연구성과활용명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직접실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 감면근거 : “○○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조 제○항의 각호 중 해당 조항 기재
- 감면사유 및 내용 : 감면 사유는 “○○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조 제○항 각호에 해당되어야 하며 내용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기재
- 감면금액 산출내역 : 기술료 감면금액의 산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

◆ 착수기본료 징수요율

⇒ 출연금 기준, 중소기업 2%, 중견기업 6%, 대기업 8%

◆ 경상기술료 징수요율

⇒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1%, 중견기업 3%, 대기업 4%

- 부처별 규정 개정 시 착수기본료 및 경상기술료의 표준화 징수요율을 반영하고 '16. 1. 1.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
- 「경상기술료 매출액 검증 가이드라인」의 홍보와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해 부처별 시범운영 기간을 가이드라인 통보후~'15.12.31까지 운영

6. 기술료 제도 관련 가이드라인

1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관련(2013.10.10)

□ 대상자 범위

<발명자>

-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기여한 자

<기여자>

-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를 위한 전략수립, 기술평가, 마케팅, 협상, 계약체결, 사후관리 등에 기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에 소속된 자로서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
 2.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시장성평가, 가치평가, 기술소개서 작성 등을 통해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자
 3. 미활용 연구개발결과물의 기술설명회 주관 및 참여, 국·내외 기업 대상 홍보 등을 통해 실시기업을 발굴하는데 기여한 자
 4.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연구개발 결과물의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
 5.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한 후속지원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경상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6. 연구개발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를 적발하거나 기술적·법적 지원을 통해 권리확보에 기여한 자
 7. 연구개발결과물과 관련한 심판·소송·중재 등 법률적 대응을 통한 기술료 징수에 기여한 자
 8. 기타 연구책임자의 추천을 받아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술이전 기여자로 인정하는 자

9. 기술이전에 따라 발생한 기술료를 통해 성과 배분을 받은 연구원은 기술이전 기여자 대상자에서 제외
10. 주관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타 기관에 속한 자는 기관의 기여 대상자에서 제외
 - ※ 타 기관에 속한 자는 별도로 체결된 중개계약 조건에 따라 보상

□ 대상자 선정

<발명자, 기여자 공통>

- 발명자, 기여자 범위에 속한 사람 중 '(가칭)기술료 보상 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보상금 지급 기준

<발명자>

- 정부출연금 지분의 50% 이상 (공동관리규정 제23조제1항제1호)

<기여자>

- 정부출연금 지분의 10% 기준으로 기관 자율로 결정(평가위원회)

<발명자, 기여자 공통>

- 발명자, 기여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연구개발결과물 또는 기술 이전에 대한 기여도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일률 또는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 지급 절차

<발명자, 기여자 공통>

- 보상금 수급자에 대한 지급 금액이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면 3개월 이내에 수급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조치. 단, 기술료를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받았을 경우는 유가증권의 현금화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가칭)기술료 보상 평가위원회 구성

<발명자, 기여자 공통>

(임무) 평가위원회는 기여자 선정, 지급 기준 마련, 기여도 산정 등 기술료 수입을 통한 보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

(구성) 평가위원회는 주관연구기관의 부기관장 또는 임원 중 기관장이 지정한 자, 기술이전·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의 장, 연구책임자, 참여 연구원 1인(1개 과제 평가 시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 중 1인, 2개 이상 과제를 동시에 평가 시는 가장 많은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 중 1인), 참여연구원과 기관 내 감사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평가위원회의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할 간사는 기술이전·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의 중간관리자로 함

(평가) 평가위원회 운영 시 고려사항

1. (대상자선정) 해당 연구개발결과와 관련하여 발명자 및 기여자 대상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대상자 선정에 있어 충분히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지급 기준)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무 부처 및 해당 부처의 관련 규정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지 여부, 단 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별도 사유 첨부
3. (지급 절차) 보상금 지급 기여자의 기여 정도의 객관적, 합리적 논리적 산출 근거의 확보와 보상금의 적절한 지급 기한 설정

(기타) 발명자 및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등을 위한 연구기관 내부의 지침 또는 규정 등이 있어 충분히 객관적, 합리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음

2

경상기술료 매출액 검증 관련(2014.8.8)

- ◆ 경상기술료 징수 금액은 ①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③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및 ④ 경상기술료 징수요율을 곱하여 산정
- ◆ 전문기관은 영리법인이 제출한 상기 ①~③항의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매출액에 대한 검증을 실시

-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은 영리법인이 국세청 세무신고를 위해 작성한 서류를 통해 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은 영리법인이 제출한 ‘재고자산 수불부’를 통해 기업 전체의 제품 판매금액 중 연구개발결과물의 제품 판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
-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는 연구개발에 투입된 총사업비(영리법인이 추가로 투자한 금액 포함) 중 정부출연금의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

〈별첨〉 정부납부 경상기술료 매출액 검증 가이드라인

3

관서운영비 집행 관련(2014.8.8)

관서운영경비 사용

- ◆ 비영리법인의 ‘기관운영경비’의 집행은 ‘기술사업화 또는 연구개발 재투자’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운영
- 최근 3년간의 통계조사 결과 비영리법인의 기술료 사용 시 기관 운영경비 집행이 늘어나고 연구개발재투자 비용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기술료의 연구개발 선순환 집행을 저해하는 사례 발생

<별첨>

정부납부 경상기술료 매출액 검증 가이드라인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한 영리법인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경상기술료를 정부(전문기관)에 납부하고자 할 경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징수 기준’과 ‘매출액 검증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징수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이하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법인 중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부(전문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영리법인’)

□ 징수 기준

<세무조정계산서, 재고자산수불부,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 **전문기관은** 영리법인이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와 ‘재고자산수불부’,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및 ‘경상기술료율’을 기준으로 다음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경상기술료를 징수함

$$\begin{aligned} \text{경상기술료 징수금액} &= \text{①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 \text{(제출서류)} \\ &\times \text{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 \text{(제출서류)} \\ &\times \text{③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 \text{(제출서류)} \\ &\times \text{④ 경상기술료율*} && \text{(규정내용)} \end{aligned}$$

* 부처별 기술료 징수 관련 규정에서 기업 유형(대, 중견, 중소기업)별로 정한 요율

○ **영리법인**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여 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매출액 증빙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함

1.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 : 서식1
2.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제16호서식]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은 국세청 세무신고를 위해 영리법인이 작성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상의 1. 수입금액 조정계산 항목의 ⑥ 조정 후 수입금액을 적용
3. 제품별 수량과 판매단가가 기재된 서류(재고자산수불부*) : 서식3
 재고자산수불부를 통해 전체 제품 매출액 중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제품이 점유하는 비율’을 산정, 단 연구개발결과물이 제품이 아닌 경우는 연구개발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재된 서류

가.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산식

| |
|---|
| $\diamond \text{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 \frac{\text{(연구개발결과물 활용 제품의) 수량} \times \text{단가}}{\text{(기업이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수량} \times \text{단가}}$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5px;">(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p> |
|---|

* 재고자산수불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영리법인에 한 함(회계전문기관 검증필)

4.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신제품 기술개발 유형’과 ‘기존제품 기능향상 유형’으로 구분

가. 신제품 기술개발 유형 산식

| |
|--|
| $\diamond \text{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 \frac{\text{(정부출연금*)}}{\text{(총사업비**) + (추가R\&D투자누적금액***)}}$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5px;">(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p> |
| <p>* 정부출연금(실투입금액) : 총 지급한 출연금 - 총 정산 환수금</p> <p>**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현금 + 민간현물</p> <p>*** 추가 R&D 투자 누적금액 : 정부출연금을 통해 개발한 연구개발성과물의 기능향상, 판매촉진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p> |

나. 기존 제품 기능향상 유형 산식

| |
|--|
| (정부출연금) |
| $\diamond \text{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 (\text{매출액증가율}) \times \frac{\text{(총사업비)} + \text{(추가R\&D투자누적금액)}}{\text{(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text{기술료 납부년도 매출액*} - \text{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 |
| $\text{※ 매출액증가율} = \frac{\text{기술료 납부년도 매출액*} - \text{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text{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 |
| <p>* 기술료 납부년도 매출액 : 기술료 납부년도 기능향상성과물의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p> <p>** 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 : 기능향상 직전년도 기존 제품의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p> |

※ 매출액증가율이 (-)가 나오는 경우는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서식2)'를 제출함

다. 상기 산식에 따라 기여도 산정이 어려운 영리법인의 경우는 전문 기관과 협의를 통해 별도의 방법으로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음

○ **영리법인**은 연구개발결과물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의 증빙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함

1.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 : 서식2

2. (필요시) 세무조정계산서 관련 서류, 회계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은 자료 등 제출

○ **전문기관**은 영리법인이 제출한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과 증빙자료(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재고자산수불부 및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증빙자료 등)를 자체 또는 외부 회계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영리법인의 징수대상 경상기술료를 최종 확정함

□ 매출액 검증절차

- **전문기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매출액과 기여도를 검증함
 1. (**매출액 확인**) 전문기관은 영리법인이 제출한 ‘경상기술료 납부 계획 및 산정내역(서식1)’과 ‘세무조정계산서 상의 수입금액’ 및 ‘연구개발결과물 제출 점유비율’을 확인하여 매출액을 확인함
 2. (**기여도 확인**) 전문기관은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추가R&D투자 누적금액, 매출액증가율을 확인하여 기여도를 확인함
 3. (**현장 검증**) 전문기관은 자체 또는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영리법인이 제출한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과 증빙자료 및 ‘매출액 미발생 신고서’와 증빙자료에 대한 서류 검증을 실시하고 필요 시 해당 영리법인을 방문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음
 4. (**검증단 구성**) 전문기관이 현장 검증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회계전문기관 및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로 검증단을 구성함

□ 기타

- 상기 가이드라인은 해당 부처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관의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상기 가이드라인의 영리법인에 대한 홍보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부처(전문기관)별 시범운영 기간은 가이드라인 통보 후 ~ ‘15. 12. 31까지 운영하도록 함

(서식1)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 양식

|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 | | | | | | | | | | |
|--|----------|--|--------------------------|---------------------------|------------------------------|--------------------------------|--------------------|--------------------------|-----------|--|
| (단위 : 원) | | | | | | | | | | |
| 연구개발 과제현황 | 대사업명 | | | | | 중사업명 | | | | |
| | 세부사업명 | | | | | 연구과제번호 | | | | |
| | 연구과제명 | | | | | | | | | |
| | 연구기관명 | | 연구책임자 | | | 참여기업명 | | | | |
| | 연구협약일 | | 연구기간 | | | | | | | |
| | 연구개발비 | | 정부출연금(A) | | 기업부담금(B) | | 정산환수금(C) | | 계 (A+B-C) | |
| | | | | | | | | | | |
| 경상 기술료 납부 계획 및 산정 내역 | 연 도 | |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A) |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B) |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C) | 연구개발결과물 기여 매출액 (D=A*B*C) | 경상기술료 요율 (E) | 징수대상 경상기술료 (F=D*E) | | |
| | 1차 년도 | | ○○년도 | | ※ 착수기본료 (납부일 : '00. 00. 00.) | | | | | |
| | | | | | (별첨 참조) | | | | | |
| | 2차 년도 | | ○○년도 | | | | | | | |
| | 3차 년도 | | ○○년도 | | | | | | | |
| | 4차 년도 | | ○○년도 | | | | | | | |
| | 5차 년도 | | ○○년도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p>○○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결과물의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직인)</p> | | | | | | | | | | |

<별첨>

○ 1차 년도 : 확정된 매출에 의거 산정

<출연금 투입에 대한 기술료 산정내역(예시)>

| 해당제품 구성요소 | | 요소별총매출액 (수량*단가) | 제품 점유비율 | 기여도 | 기여 매출액 | 경상 기술료율 | 확정기술료 |
|-----------------|---|--------------------|------------|-----|-----------|------------|-------|
| 경상기술료 관련제품 | a | | | | | | |
| | b | | | | | | |
| | c | | | | | | |
| | : | | | | | | |
| | h | | | | | | |
| | 계 | 요소별매출액 합계 기재 | - | - | - | - | F |
| 경상기술료 미관련 제품 | 계 | 총매출액만 기재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F |

○ 2차~5차 년도 : 예상매출액 및 기여도를 추정하여 연도별로 각각 제시

<출연금 투입에 대한 기술료 산정내역(예시)>

| 해당제품 구성요소 | | 요소별총매출액 (수량*단가) | 제품 점유비율 | 기여도 | 기여 매출액 | 경상 기술료율 | 확정기술료 |
|-----------------|---|--------------------|------------|-----|-----------|------------|-------|
| 경상기술료 관련제품 | a | | | | | | |
| | b | | | | | | |
| | c | | | | | | |
| | : | | | | | | |
| | h | | | | | | |
| | 계 | 요소별매출액 합계 기재 | - | - | - | - | F |
| 경상기술료 미관련 제품 | 계 | 총매출액만 기재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F |

[양식 해설]

■ 개 요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은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연구결과물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문기관에 제출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 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정산환수금액 제외)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상의 수입금액
-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제품이 점유하는 비율
-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 가이드라인의 ‘신제품 기술개발 유형’ 및 기존제품에 대한 기능향상 유형 중 해당 분야에 대한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
※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제품이 여럿일 경우 각 제품별로 징수대상 경상기술료를 산출하고 합산한 값을 기재하되 “별첨”으로 산정내역을 첨부
- 경상기술료 요율 : 해당 부처의 연구개발 관련 규정에서 기업 유형별(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로 정한 요율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로 기술료를 납부하기 위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리법인이 기업 유형별로 출연금 기준으로 일정비율 납부하는 금액

(서식2) '경상기술료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 양식

| <u>경상기술료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u> | | | | | | |
|---|-------|--|----------|----------|--------------|--|
| (단위 : 원) | | | | | | |
| 연구개발과제 현황 | 대사업명 | | | 중사업명 | | |
| | 세부사업명 | | | 연구과제번호 | | |
| | 연구과제명 | | | | | |
| | 연구기관명 | | 연구책임자 | | 참여기업명 | |
| | 연구협약일 | | 연구기간 | | | |
| |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A) | 기업부담금(B) | 정산환수금(C) | 계 (A+B-C) | |
| | 착수기본료 | 금액 원 (납부일 : '00. 00. 00.) | | | | |
| 매출액 미발생 사유 | | | | | | |
| <p>○○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결과물의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연구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직인)</p> | | | | | | |

[양식 해설]

■ 개 요

“경상기술료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연구결과물의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전문기관에 제출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 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정산환수금액 제외)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로 기술료를 납부하기 위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리법인이 기업 유형별로 출연금 기준으로 일정비율 납부하는 금액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 매출액미발생사유 : 연구과제 종료 후 기술실시를 위해 투입된 인력과 기간(시간) 등에 대해 기술하고, 기타 미발생 사유에 대해 기술

(서식3) '제품별 수량과 판매단가가 기재된 서류(재고자산수불부)' 양식

| <u>재 고 자 산 수 불 부</u> | | | | | | | | | |
|----------------------|----|-----------|------------|-------------|-----------|------------|-------------|-----------|-------------|
| 일자 (년도) | 적요 | 입고 | | | 출고 | | | 재고 | |
| | | 수량 (개) | 단가 (천원) | 금액 (백만원) | 수량 (개) | 단가 (천원) | 금액 (백만원) | 수량 (개) | 금액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상기 양식은 예시로 제시한 양식으로 영리법인에서 재고자산수불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영리법인에서 사용하는 양식으로 대체가 가능함

<참고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2.28>

(앞 쪽)

| | | | |
|----------|---|------------------|---------|
| 사업 연도 | ~ | 수입금액조정명세서 |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1. 수입금액 조정계산

| 계 정 과 목 | | ③ 결산서상 수입금액 | 조 정 | | ⑥ 조정후 수입금액 (③ + ④ - ⑤) | 비 고 |
|---------|-------|----------------|-------|-------|---------------------------|-----|
| ① 항 목 | ② 과 목 | | ④ 가 산 | ⑤ 차 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 ⑦ 공사명 | ⑧ 도급자 | ⑨ 도급 금액 | 작업진행률계산 | | | ⑬ 누적익금 산입액 (⑨ × ⑫) | ⑭ 전기말 누적수입 계상액 | ⑮ 당기회 사수입 계상액 | ⑯ 조정액 (⑬ - ⑭ - ⑮) |
|-------|-------|---------|--|-----------------------------|------------------|--------------------------|----------------------|---------------------|----------------------|
| | | | ⑩ 해당사업 연도말 총공사비 누적액 (작업시간 등) | ⑪ 총공사 예정비 (작업시간 등) | ⑫ 진행률 (⑩ / ⑪)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나. 중소기업 등 수입금액 인식기준 적용특례에 의한 수입금액

| 계 정 과 목 | | ⑰ 세법상 당기 수입금액 | ⑳ 당기 회사수입금 액 계상액 | ㉑ 조정액 (⑰ - ⑳) | ㉒ 근거법령 |
|---------|-------|------------------|---------------------|------------------|--------|
| ㉓ 항 목 | ㉔ 과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다. 기타 수입금액

| ㉕ 구 분 | ㉖ 근 거 법 령 | ㉗ 수 입 금 액 | ㉘ 대 응 원 가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210mm × 297mm [일반용지 70g/m² (재활용품)]

작성 방법

※ 결산서상 수입금액과 세법상 수입금액의 차이가 있는 법인은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수입금액 조정계산

가. ③결산서상 수입금액란에는 계정과목별로 총매출액 및 영업외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총매출액은 매출에누리과 환입액 및 매출할인액을 빼서 적고, 영업외수익에 계상된 금액 중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④조정가산란은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나”에 따라 계산된 ⑩조정액 계 및 ⑪조정액 계와 ⑮수입금액란의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 그 금액을 적습니다.

⑤조정차감란은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나”에 따라 계산된 ⑩조정액 계 및 ⑪조정액 계와 ⑮수입금액란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 그 금액을 적습니다.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⑨도급금액란은 총 도급금액을 적고, ⑫란의 진행률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이 총공사예정비에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되, 건설의 경우 수익실현이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작업시간 등)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 ⑫진행률에 의한 ⑬란의 누적익금산입액에서 ⑭란의 전기말누적수입계상액과 ⑮란의 당기회사수입계상액을 뺀 금액인 ⑩조정액 계의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④조정가산란에 적고, 음수(-)인 경우에는 ⑤조정차감란에 적습니다.

다. ‘나. 중소기업 등 수입금액 인식기준 적용특례에 의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단서, 및 제6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 회사 결산상 수입금액과 세법상 수입금액이 다른 경우 그 차이를 조정합니다.

라. ‘다. 기타 수입금액’란은 상기 “가”, “나” 외의 수익으로서 조정계산이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수입금액이 누락된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⑲구분란에는 총매출액, 위탁판매 및 임대료수입 등으로 적고 ⑮수입금액란의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④조정가산란에 적고, 음수(-)인 경우에는 ⑤조정차감란에 적습니다. ⑳대응원가란은 결산상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은 대응원가를 적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3. ④조정가산란의 계와 ⑤조정차감란의 계를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⑩조정액 계, ⑪조정액 계와 ⑮수입금액란의 계를 합계한 금액이 ④조정가산란의 계에서 ⑤조정차감란 계를 뺀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⑥조정 후 수입금액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⑪합계의 ④계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1. 주요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귀속 및 기술료 제도 현황

| 구분 | 한국 | 미국 | 일본 | 독일 | 이스라엘 ¹⁾ |
|----------------|------------------------------|------------------------------------|-------------------------------------|--------------------------------------|--|
| 관련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바이-돌법(특허법), 연방기술이전법, 국가기술이전진흥법 | 산업기술력강화법 ²⁾ , 대학등기술이전촉진법 | 특허법, 종업원발명법 | 산업연구개발촉진법 |
| 결과물 귀속 | 기술개발기관 (또는 국가) | 기술개발기관 ³⁾ | 기술개발기관 (또는 국가) | 기술개발기관 ⁴⁾ | 과제수행기관 |
| 기술료 산정기준 (로열티) | 기술의 시장가치 (당사자 간 협의) | 기술의 시장가치 (관련 규정 無) | 기술의 시장가치 (관련 규정 無) | 기술의 시장가치 (관련 규정 無) | 기술의 시장가치 (해외이전 별도제도 有 ⁵⁾) |
| 기술료 사용기준 (로열티) | 정부가 정한 기준 | 결과물 소유 기관 자율 (연방특허는 정부기준) (관련규정 無) | 결과물 소유 기관 자율 (국유특허는 정부기준) (관련규정 無) | 결과물 소유 기관 자율 (대학의 경우 연구자 보상금 30% 지급) | - |
| 정부납부 기술료 산정기준 | 정부출연금 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 | 제도 없음 | 제도 없음 | 제도 없음 | 최초 3년 매출의 3.0%~4.0% 이후 매출의 3.5%~4.5% (상한선 ⁶⁾ 有) |

1) 이스라엘의 경우 산업연구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 관련 제도 설명
 2) 일본판 바이-돌 제도 근거조항이 2009년 4월 산업활력재생특별법에서 산업기술력강화법으로 이관
 3) 美 연방법원 판례는 결과물의 원시적 귀속주체는 발명자이되 연구기관이 이를 예약승계한 것으로 해석
 4) 독일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별도 법률이 없으며, 특허법과 종업원발명법에 근거하여 원시적 귀속주체는 발명자이되 연구기관이 이를 승계하도록 제도 운영
 5) 지급받은 보조금 등을 근거로 산출한 금액을 이스라엘 정부에 추가로 지불할 경우 이전가능
 6) 지급받은 보조금에 LIBOR금리를 기준으로 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2. 이스라엘의 기술료 제도 현황

□ 우리나라의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와 유사점

- 1984년 ‘산업연구개발촉진법(Encouragement of Industrial Research and Development Law)’를 제정을 통해 산업통상노동부(現 경제부) 내 수석과학관실(OCS)을 설치하여 산업연구개발정책을 총괄
 - ※ 민간 R&D지원사업의 60% 가량(사업 규모 기준)을 산업통상노동부가 지원
- 경제부 OCS의 산업경쟁연구개발프로그램(industrial competitive R&D program)의 경우, 총 사업비의 20%~50% 범위의 금액을 지원하고, 향후 매출의 3%~4.5% 가량을 기술료로 징수
- 정부가 징수한 기술료는 산업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

□ 우리나라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와 차이점

- 정부납부 기술료 징수대상인 산업경쟁연구개발프로그램의 경우,
- 기술의 상업화에 방점이 있고 기술료 징수의 전제조건도 상업화의 성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출연금 기반 연구개발사업과는 성격이 다소 상이
- 이스라엘은 주로 기술을 상업화하고 싶은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을 보조

1. 기술료 제도의 변천과정

□ 공동관리규정 제정 이전

- 기술료 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구(舊) 과학기술처(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변천
-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구 과학기술처(부)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 외의 사업을 운영하고, 타부처에서도 R&D사업을 추진하며 부처별·사업별로 별도 기술료 제도를 운영함
- 이에 따른 연구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 공동관리규정이 제정(2001.12.19.)되었으나, 각 사업별 규정을 포괄하는 정도의 내용만을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

□ 공동관리규정 제정 이후

- 공동관리규정 제정(2001.12.19.)에도 각 사업별로 별도 규정이 운영되어 왔으나, 2008년 각 주요 부처의 사업별 규정 통일*
 - * 교과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정 2008.7.21.), 산업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제정 2009.1.1.)
- 이후 부처별 연구관리규정의 통일화 노력이 지속됨에 따라 각 부처별로 별도로 운영되던 사항들의 차이가 축소되는 추세
 - 기술료 징수요율 통일('12년) : 기업 유형별로 출연금의 일정비율(대기업 40%,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10%)를 기술료로 징수
 - 부처별 상이한 기술료 기준 표준화('14년) : 징수기간, 감면기준, 납부수단, 납부서식, 경상기술료 착수기본료 및 경상기술료율 등

□ 구 과학기술처(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 변천과정

| 연도 | 관련규정 | 기술료 제도 일반 | 정부납부제도 |
|------|---|--|--|
| 198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개정 1982.5.29.) 제13조의6 제3항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제정 1982.6.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 연구개발성과는 정부(과학기술처)가 소유. 단, 기업체 부담금 있을 경우 기업체와 공유 (기술료)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여 매출 또는 공정혁신 등을 달성 하였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정부출연금 상당액을 징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납부금액 없음 |
| 198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개정 1984.5.3.) 제13조의6 제3항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개정 1985.5.16.) 기술료사용지침(1984.8.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 연구개발성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주관 연구기관(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소유하고, 기업체 부담금 지분은 기업체가 소유 (기술료) 상기와 동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50%를 한국과학재단 기금에 납부 |
| 198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개정 1989.12.2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 연구개발성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주관 연구기관 소유로 하되, 지식재산권의 원형보존을 위해 별도합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기술료) 주관연구기관이 정부출연금 이상을 기술료로 징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기관 유형별 납부 - 출연(연): 기금조성(15%), 잔여금 있을 시 최대 25% - 그 외: 기금조성(70%) |
| 199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개정 1992.5.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 상기와 동일 (기술료) 주관연구기관이 정부출연금 범위 내에서 매출 발생시점으로 부터 8년 이내에 징수하고, 구체적인 금액 및 기간은 자체적으로 협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납부금액 없음 |
| 199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개정 1993.8.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 상기와 동일 (기술료) 상기와 동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일 경우 기술료 징수 금액의 50% 이상을 관리 기관에 납부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 |

□ 공동관리규정 상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 변천과정

| 연도 | 관련규정 | 기술료 제도 일반 | 정부납부제도 |
|------|---|---|--|
| 2001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정 2001.12.19) | · (소유) 주관연구기관이 소유. 단,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이 소유 · (기술료)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정부출연금 이상을 실시 계약 체결 또는 매출액 발생 시점으로 5년 이내에 징수 | · 주관기관 유형별로 출연금 상당액의 일정비율 납부 - 비영리: 30% 전문기관 납부 - 영리: 50% 전문기관 납부 |
| 2005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05.3.8.) | · (소유) 상동 · (기술료)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기술료를 징수 | · 주관기관 유형별로 기술료 중 출연금 지분의 일정비율 납부 - 비영리: 20% 전문기관 납부 - 영리: 30% 전문기관 납부 |
| 2008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08.12.31.) | · (소유)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이 소유 · (기술료)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기술료를 징수 | · 주관기관 유형별로 차등납부 - 비영리: 전문기관 납부분 없음. 단, 9% 과학기술인공제회 납부(대학 제외) - 영리: 출연금 지분의 30% 전문기관 납부 |
| 2012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12.5.14.) | · (소유) 상동 · (기술료) 상동 | · 주관기관 유형별로 차등납부 - 비영리: 상동 - 영리: 출연금의 ① 중소: 10% 전문기관 납부 ② 중견: 30% 전문기관 납부 ③ 대: 40% 전문기관 납부 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 |
| 2014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14.8.12.) | · (소유) 기술개발기관(공동개발인 경우 공동소유) · (기술료) 상동 | · 주관기관 유형별로 차등납부 - 비영리: 전문기관 납부분 없음 - 영리: 상동 |

2. 2014년도 주요 관련규정 개정사항

□ 국가재정법 (개정 2014.1.1.)

- 기존에는 각 부처에서 징수한 정부납부 기술료를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재투자 등 특정목적으로 세입세출 외로 운영하였으나,
- 관련 조항 개정에 따라 징수한 정부납부 기술료를 국고납입하거나 기금에 산입하여 기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신구조문 대비표>

| 국가재정법 (개정 2013.5.28.) | 국가재정법 (개정 2014.1.1.) |
|---|-----------------------------------|
|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 ④ <생략> |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 ④ <생략> |
| ⑤ <u>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 ⑤ <삭제> |
| ⑥ <생략> | ⑥ <현행과 같음>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4.8.12.)

①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원칙 변경

- 무형적 성과물(특허 등)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 단독소유 원칙에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이 소유하는 ‘개발자(기관) 소유원칙’으로 전환
- 연구개발결과물 공동소유 증가에 따른 후속연구 및 사업화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참여기관 간 실시권(Access Right)을 인정

<신구조문 대비표>

| 공동관리규정 (개정 2013.9.26.) | 공동관리규정 (개정 2014.8.12.) |
|--|---|
| 제20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 제20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
| ① (생략) | ① (현행과 같음) |
| ② <u>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u> | ② <u>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결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u> |
| 1. <u>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u> | |
| 2. <u>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u> | |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③ ~ ⑤ (생략)

⑥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제21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① ~ ⑦ (생략)

<신설>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출원·등록
하거나 포기-----
-----.

1. ~ 3. (현행과 같음)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연구기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기 소유의 무형적 결과물을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신 설>

⑨ 제8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술료 제도 개선

- 정부납부 경상기술료의 징수 기간을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5년으로 한정하고, 납부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포함하고 유가증권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지식재산권 관련 경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비영리법인이 징수한 기술료의 5퍼센트는 지식재산경비로 선공제하여 사용하도록 함
- 부처별로 유사 내용에 대해서 중복 보고를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술실시 보고서’,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 2종으로 통합
- 연구원간 보상금 격차 완화를 위해 연간 개인 보상금이 2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구간을 설정하여 지급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함
-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전문기관이 징수한 정부납부 기술료를 국고 또는 기금에 산입·사용하게 되어 정부납부 기술료의 사용용도에 대한 규정을 폐지함

<신구조문 대비표>

| 공동관리규정 (개정 2013.9.26.) | 공동관리규정 (개정 2014.8.12.) |
|---|--|
| 제22조(기술료의 징수) | 제22조(기술료의 징수) |
| ① 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 | ① ----- ----- ----- ----- ----- ----- |

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생략)

2. 중견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3. (생략)

②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⑥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현행과 같음)

② -----

----- 기술실시 보고서 -----

-----.

③ -----

-----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 보고서-----.

④ -----

----- 연구개발결과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결과물에 -----.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2. (생략)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다.

⑧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현금, 신용카드 또는 약속어음으로 기술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를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거나 적립하여야 하고, 나머지 기술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과 제2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소유기관 -----

-----.

1.·2. (현행과 같음)

③ -----
----- 3개월 -----
-----.

④ (생 략)

⑤ 삭 제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와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재투자
- 2.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 3.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4.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의 산입·활용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는 경우 기술료 사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술료 징수실적과 함께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기술료 징수실적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 다만, 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잔액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의3]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보상금 지급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기준 (제23조제8항 단서 관련)

1. 보상금의 지급 원칙

가. 기술료에서 참여연구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은 발명신고서 등에 기재된 지분으로 산정 하되, 기여율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개별 참여연구원을 평가하여 기여율을 산정한다.

2. 보상금의 지급 기준

개별 참여연구원이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상금 누적 금액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지급한다.

| 보상금 누적금액 | 보상금 지급액 |
|----------------------|-----------------------------------|
|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정부 출연금 지분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
|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 정부 출연금 지분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
|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정부 출연금 지분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
| 50억원 초과 |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

1 정부납부 기술료 산정시 정부출연금의 범위는?

-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영리법인이 결과물을 직접실시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일정 비율 또는 출연금 범위 내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부납부 기술료를 산정(공동관리규정 제22조 제1항)
- 종전 공동관리규정에서는 연구개발결과물의 주관연구기관 소유 원칙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 정부납부 기술료 산정 시 기본적으로는 사업 전체의 출연금을 기준으로 하고, 세부과제별 결과물 소유 및 출연금 지급이 구분되는 경우 등에서는 세부과제 또는 기관별 출연금을 기준으로 함
- 그러나 개정된 규정에서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원칙이 개발기관 소유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기관이 소유한 결과물을 개발하는데 기여한 출연금(해당 기관이 사용한 출연금)을 기준으로 정부납부 기술료를 산정

2 출연금의 일부가 회수·환수된 경우 정부납부 기술료 산정은?

- 정부납부 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일정 비율 또는 정부출연금 내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공동관리규정 제22조 제1항)
- 상기 규정에서는 ‘정부출연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기술료 산정 시에는 회수나 환수된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3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개량기술의 소유권은?

- 연구개발결과물을 바탕으로 실시기관 등이 개량기술을 개발하여 취득한 지식재산권의 소유와 관련해서는 공동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가 없음
- 따라서 개량기술의 소유권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관 간의 합의(실시계약서)에 따르되,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개량기술은 개량기술을 개발한 기관의 소유가 됨
- 다만, 개량기술의 바탕으로 된 연구개발결과물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결과물 소유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4 기업규모에 따른 정부납부 기술료 산정의 기준시점은?

- 공동관리규정에서는 기술료 산정 시 어느 시점의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특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일부부처 산하 전문기관에서는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의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정부납부 기술료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소관 전문기관 등에 확인
- * 영리법인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기술실시보고서(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시점
- ※ 상기 방식에 따르면 과제 수행 시에는 중견기업이었다가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점에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중소기업의 징수요율을 적용

5 정부납부 기술료를 현물로 납부할 수 있는지?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은 현금, 신용카드, 어음으로 납부할 수 있음(공동관리규정 제22조 제8항)
 - 종전 규정에서는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수단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규정하여 현물을 포함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여 않았으나, 통상 현물로도 납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음
 - 그러나 개정된 규정에서는 기술료의 납부수단을 현금, 신용카드, 어음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현물로 기술료를 납부할 수 없음
 - ※ 종전 공동관리규정이 적용되던 기간에도 일부 부처에서는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수단으로 현금 또는 어음 등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소관 전문기관에 확인 필요

6 제3자실시를 통해 징수한 기술료의 사용항목별 인정범위는?

- 비영리법인 및 영리법인은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를 연구개발재투자, 기관운영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공동관리규정 제23조 제1항·제2항)
 - 상기 규정에서는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칙상으로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해당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 연구개발사업의 소관 부처에서 사용기준 및 증빙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한 바가 있을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

7 연차협약과제 도중 규정이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는?

- 공동관리규정 개정 시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은 부칙에 명시
 - 2012.7.1. 시행 공동관리규정의 경우 부칙 제8조에서 개정 기술료 규정을 시행일 이후 협약과제부터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 해당 조항에서 ‘협약’은 연차협약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해당일 이후 협약한 연차과제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
 - 반면 2013.9.26. 시행 공동관리규정에서는 개정규정을 시행일 이후 기술실시계약체결 과제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술실시계약 시점에 따라 시행일 이전 협약한 과제에도 적용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2014.8.12. 시행 공동관리규정에서는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활용, 기술료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를 개정사항별로 협약 또는 기술실시계약으로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확인 필요

8 서적 등의 연구개발결과물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 연구보고서의 판권(저작권) 등은 무형적 결과물로 구분되어 개별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이 소유(공동관리규정 제20조 제2항)
 - 상기 규정에 따라 저작권을 소유한 기관은 연구보고서 등을 출판하여 판매할 수 있음

| 부처 | 연구개발사업 근거법률 |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등 |
|---------------|-----------------------------|--|
| 부처공통 (미래부) | 「과학기술기본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 미래창조 과학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
| 산업통상 자원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
| 중소 기업청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 보건 복지부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
| 환경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
| 농촌 진흥청 | 「농촌진흥법」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
| 국토 교통부 | 「건설기술 진흥법」 |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 해양 수산부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은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소관

□ 정부납부 기술료 징수기준

| 구분 | 공동관리규정 | 미래창조과학부 | |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청 | 보건복지부 |
|-------|---|--|---|---|---|---|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4.8.12.]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 2013.6.10.]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2014.1.6]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 2014.4.22.]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개정 2012.7.1.]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 2014.3.3.]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개정 2012.11.1.]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개정 2014.5.13.] |
| 징수 대상 |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 또는 제3자실시하는 영리법인 | 공동관리규정과 동일 |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참여기관 |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참여기관 | 최종평가 결과 성공인 과제의 주관기관 등 (주관기관이 기업이 아닌 경우 참여기업) | 공동관리규정과 동일 |
| 징수 금액 | 정액기술료 방식 ①직접실시 중소: 출연금의 10% 중견: 출연금의 30% 대기업: 출연금의 40% ②제3자실시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중 해당 금액을 납부 | 정액기술료 방식 ①직접실시 중소: 출연금의 10% 중견: 출연금의 30% 대기업: 출연금의 40% ②기술이전(영리법인) 중소: 출연금지분의 10% 중견: 출연금지분의 30% 대기업: 출연금지분의 40% | 정액기술료 방식 중소: 출연금의 10% 중견: 출연금의 30% 대기업: 출연금의 40% | 정액기술료 방식 중소: 출연금의 10% 중견: 출연금의 30% 대기업: 출연금의 40% | 정액기술료 방식 출연금의 10% | 정액기술료 방식 공동관리규정과 동일 |
| | 경상기술료 방식 출연금 범위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징수 | | 경상기술료 방식 ①착수기본료 중소: 출연금의 5% 중견·대기업: 출연금의 10% ②경상기술료 중소: 매출액의 1.25% 중견: 매출액의 3.75% 대기업: 매출액의 5% | 경상기술료 방식 ①착수기본료 중소: 출연금의 5% 중견·대기업: 출연금의 10% ②경상기술료 중소: 매출액의 1.25% 중견: 매출액의 3.75% 대기업: 매출액의 5% | | |
| 징수 기간 | 정액기술료 방식 ①직접실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②제3자실시: 기술이전계약을 통해 기술료(로알티)를 징수한 후 3개월 이내 전문기관에 납부 | 정액기술료 방식 ①직접실시: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후 5년 이내 ②제3자실시: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점 기준 5년 이내 | 정액기술료 방식 실시계약 체결 또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기준 5년 이내로 연간 균등분할납부 | 정액기술료 방식 실시계약 체결 또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기준 5년 이내로 연간 균등분할납부 | 정액기술료 방식 ①일시 납부: 납부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②분할 납부: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납부계획서 제출마감일)로부터 3년간 1년 단위로 분할하여 징수 | 정액기술료 방식 ①직접실시: 기술료 납부 안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정 날짜에 납부. 분할납부 가능 ②제3자실시: 기술이전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후 30일 이내 전문기관에 납부 |
| | 경상기술료 방식 매출이 발생한 후 5년간 징수 | | 경상기술료 방식 ①착수기본료: 기술료확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②경상기술료: 매출이 처음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 ※ 경상기술료 누적 징수액은 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음 | 경상기술료 방식 ①착수기본료: 기술료확정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②경상기술료: 매출이 처음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 ※ 경상기술료 누적 징수액은 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음 | | |
| 감면 조항 | 세부기준은 중앙행정기관장에 위임 | ①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이 기업화된 경우 ②공공성, 수출입 전략상 또는 기초 선도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③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된 경우 ④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공동지식재산권 등을 실시할 경우 ⑤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①정액기술료 일시·조기납부의 경우 최대 40%를 감면 ②조기완료 과제 중 “혁신성과” 과제의 기술료 일부 감면가능 ③실시기업이 중소·중견 기업인 “혁신성과” 과제의 경우 30% 감면* ④실시기업의 부도·폐업·파산 등의 사유시 기술료 면제가능 *실시기업은 감면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 교육 및 인센티브 재원 등으로 활용 | ①정액기술료 일시·조기납부의 경우 최대 40%를 감면 ②조기완료 과제 중 “혁신성과” 과제의 기술료 일부 감면가능 ③실시기업이 중소·중견 기업인 “혁신성과” 과제의 경우 30% 감면* ④실시기업의 부도·폐업·파산 등의 사유시 기술료 면제가능 *실시기업은 감면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 교육 및 인센티브 재원 등으로 활용 | ①일시·조기납부의 경우 기술료의 최대 40%까지 감면 ②기술개발 기여자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일부 감면 ③분할납부하며 보증보험증권 제출시 5% 추가감면 ④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면제가능 | ①일시·조기납부시 기술료의 최대 30%까지 감면 ②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면제 |
| 납부 수단 | 현금, 신용카드, 약속어음 |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 | 현금 (분할납부 시 어음 등으로 보충) | 현금 (분할납부 시 어음 등으로 보충) | 현금 또는 신용카드 (분할납부 시 어음 등으로 보충) | 현금 (분할납부 시 지급이행 보증보험증권 제출) |

※ 미래창조과학부(ICT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은 참여기업 등 제3자실시의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전문기관이 직접 정부납부 기술료를 징수

| 구분 | 환경부 | 농촌진흥청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농림축산식품부 |
|-------|---|---|---|--|---|
| 관련 규정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 2013.4.25.]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 2014.4.1.]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 2013.8.14.]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정 2013.6.11.] | 농림수산물과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개정 2014.2.13.] |
| |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개정 2014.4.1.]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개정 2013.12.23.]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정 2013.8.27.]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 2014.5.13.] |
| | | | |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개정 2014.3.12.] |
| 징수 대상 | 민간부담금이 있는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인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 또는 제3자실시하는 영리법인 | 공동관리규정과 동일 | 공동관리규정과 동일 | 공동관리규정과 동일 | 공동관리규정과 동일 |
| 징수 금액 | 정액기술료 방식 공동관리규정 | 정액기술료 방식 공동관리규정과 동일 | 고정(정액)기술료 방식 공동관리규정과 동일 | 고정(정액)기술료 방식 공동관리규정과 동일 | 정액기술료 방식 공동관리규정과 동일 |
| | | 경상기술료 방식 ①착수기본료 중소기업: 출연금의 5% 중견·대기업: 출연금의 10% ②경상기술료 중소기업: 매출액의 1.25%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대기업: 매출액의 5% | 경상기술료 방식 중소기업: 매출액의 2% 중견기업: 매출액의 6% 대기업: 매출액의 8% ※경상기술료 방식은 5년 내 매출 발생 불가능 등 특이 사유 있을 경우에만 선택가능 | 경상기술료 방식 중소기업: 매출액의 2% 중견기업: 매출액의 6% 대기업: 매출액의 8% ※경상기술료 방식은 5년 내 매출 발생 불가능 등 특이 사유 있을 경우에만 선택가능 | 경상기술료 방식 ①착수기본료 중소기업: 출연금의 5% 중견·대기업: 출연금의 10% ②비례(경상)기술료 중소기업: 매출액의 1.25%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대기업: 매출액의 5% |
| 징수 기간 | 정액기술료 방식 ①직접실시: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부터 5년 동안 균등분할 징수 ②제3자실시: 기술료(로알티)를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정액기술료 방식 ①직접실시: 실시계약 체결일 또는 납부계획서 제출일 기준 5년 이내 균등분할 ②제3자실시: 기술료(로알티)를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고정(정액)기술료 방식 ①직접실시: 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납부 ②제3자실시: 기술료(로알티)를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고정(정액)기술료 방식 ①직접실시: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5년간 납부 ②제3자실시: 기술료(로알티)를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정액기술료 방식 ①직접실시: 실시계약 체결일 또는 납부계획서 제출일 기준 3년 이내 균등분할 ②제3자실시: 기술료(로알티)를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 | 경상기술료 방식 ①착수기본료: 기술료확정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②경상기술료: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 | 경상기술료 방식 10년 (규정상 기산점이 명시되지 않음) | 경상기술료 방식 10년 (규정상 기산점이 명시되지 않음) | 비례(경상)기술료 방식 ①착수기본료: 기술료확정결과 통보 후 3개월 이내 ②비례(경상)기술료: 매출발생시점으로부터 10년 |
| 감면 조항 | ①조기납부시 최대 40% ②연구개발물 소유기관이 대기업·중견기업이고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 50% 감면 | ①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가 실시할 경우: 전액감면 ②조기납부: 최대 20% 감면 ③공공성, 수출입전략상 또는 기초선도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 또는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20% 감면 ④분할납부하며 보증보험증권 제출시 5% 추가감면 ⑤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면제 | ①고정(정액기술료)의 경우 조기납부시 최대 30% ②공공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공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③기타 장관이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①조기납부의 경우 최대 50% ②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 100% 감면 ③공공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공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④기타 장관이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①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 100% 감면 ②중소기업: 70% 감면 (참여기업일 경우 80% 감면) ③중견기업: 50% 감면 (참여기업일 경우 60% 감면) ④(참여)대기업: 30% 감면 ⑤조기납부: 30% 추가감면 ※농림수산물과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4조 |
| 납부 수단 |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 |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 (분할납부 시 보증보험증권 제출) |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 |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 | 현금 |

□ 정부납부 기술료 사용기준

| 부처 | 근거 규정 | 사용용도 |
|-------------|--|--|
| 공동관리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4.8.12.] | ○ 국고 또는 기금에 산업·활용 (기금 산업을 위해 개별 부처 법령 개정추진 중) |
| 미래창조 과학부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 2013.6.10.] | ○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재투자 2.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3.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의 산업·활용 |
|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2014.1.6] | ○ (연구개발)재투자사업,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사업에 사용하거나 국고에 산업·활용 1. 연구개발사업의 선행연구, 사전기획, 성과분석 및 사후 평가를 위한 사업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을 위한 사업 3. 기술이전의 촉진 및 성과확산을 위한 사업 4. 연구시설·장비 등 산업기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5. 기술개발 장려·촉진을 위한 기술문화 조성 사업 등 |
| 산업통상 자원부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개정 2012.7.1.] | ○ 다음 각 호의 기술료사업에 사용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 혁신사업에의 재투자 2.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3.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의 산업·활용 |
| 중소 기업청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개정 2012.11.1.] | ○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 1.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에 재투자 2.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투자 3. 공공기금에의 출연 4.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보건 복지부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개정 2014.5.13.] | ○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 2.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3.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 산업·활용 |

※ 국가재정법 개정(2014.1.1.)에 따라 정부납부 기술료를 부처 자체 사업에 사용할 수 없고, 국고 또는 기금에 산업하여 활용해야 하므로 근거규정 개정 필요

| 부처 | 근거 규정 | 사용용도 |
|---------|---|---|
| 환경부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 2013.4.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개발사업에의 재투자 2.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관연구기관의 실시기업 기술지원 사업 나. 연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환경기술인력 교류사업 다. 우수한 환경기술을 개발한 자에 대한 포상 및 환경기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라. 환경기술정보 교류사업 마. 환경기술평가 지원사업 바.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 사. 그 밖에 환경산업 및 기술진흥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운영규정 [개정 2014.4.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재투자 2.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3.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의 산입·활용 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 2013.8.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재투자 2.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3.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의 산입·활용 |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정 2013.6.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재투자 2.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3.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의 산입·활용 |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 규정 [개정 2014.4.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관리규정 제23조 제6항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전 기준(개정 2013.9.26.)으로 다음 용도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재투자 2.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3.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의 산입·활용 ※ 공동관리규정 개정('14.8.12)으로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규정의 개정이 필요 |

※ 국가재정법 개정(2014.1.1.)에 따라 정부납부 기술료를 부처 자체 사업에 사용할 수 없고, 국고 또는 기금에 산입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각 부처 근거규정 개정 필요